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정원은 남녀 구분 없이 89명으로 한다. 다만 생활실내 입소자와 같은 동성을 구분하여 입소한다.

② 모집방법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어르신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및 홍보지, 지역사회 홍보, 입소자나 보호자 대상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나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변경계약을 실행한다.

② 계약 목적은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경북작은자의 집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입소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경북작은자의 집에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인정서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재계약으로 보고, 재계약을 실행 한다.

⑤ 계약서는 보호자가 시설방문 이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시설에서 계약서를 등기우편발송하여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설명하고 계약을 실행한다. 단, 우편발송시 시설에서는 계약서를 2부 발송하고 반송우편봉투를 동봉한다.

⑥ 표준약관 19개 항목(목적, 계약기간, 입소/이용료납부,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퇴소, 입소 물품, 면회 및 외출/외박,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및 간식, 요양실의 배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이용계약서의 해석)에 대한 급여제공계약서는 **경북작은자의 집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별표1]**과 같이 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

⑦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3. 계약자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유선, SMS문자 등으로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및 지침 이행 의무
6.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준수 의무
③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 방법 : 입소자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촉탁진찰비, 병원진료비, 약제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입소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보호자가 인정할 경우)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계약 작성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한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촉탁진찰비, 병원진료비, 약제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3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3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월말일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를 하여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해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해지 되었을 경우
4.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별표1]** 또는 변경계약서**[별표3]**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시설과 보호자는 상호 통보하여 입소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안내문)를 보호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 포함) 제시(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청송군청에 장기요용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경북작은자의 집 원장)에게 제출-입소서류확인(제9조 입소절차 등 제1항)-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 입력-서비스이용